

2025년도 [재]당진문화재단 임원(감사) 공개모집 공고

당진시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과 재단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재)당진문화재단 비상임 임원(감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가진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13일

(재)당진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인원 및 주요업무

직 위	인원	근무형태	주 요 업 무
감 사	1명	비상근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제반 업무의 감사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보고 또는 시정 요구 4.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 또는 의견 진술

2 임용기간

- 임명일로부터 2년

3 근무형태 및 보수

- 근무형태 : 비상근 (명예직)
- 보 수 : 무보수 (단, 회의 참석 시에 일부 수당 지급)

4

응모자격 및 선임방법

□ 임원의 자격제한

※ 임원의 자격 제한(결격 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당진문화재단 정관」

제1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인사가 아니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 02. 23>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당진문화재단 임원 인사관리 규정」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3.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의원

□ 지원자격

임원후보자 자격기준(비상임 감사) (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필수요건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당진문화재단 정관」 제10조 임원 선임의 제한 및 「당진문화재단 임원 인사관리 규정」 제3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포괄적 요건	1. 문화재단의 비전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2. 문화예술·예술경영·행정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문제 해결 및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도덕성과 윤리관 등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
구체적 요건	○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선임방법

- 공개경쟁 방식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서류 심사)후 후보자 추천
-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임명권자(시장)의 승인 후 임명
- 적격심사 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임원후보의 추천) 제4항
- 결과발표 : 당진시 및 당진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선임 시기 : 2025년 12월중 (예정)

5 공고 및 원서접수

- 공 고 기 간 : 25. 11. 13.(목) ~ 11. 21.(금) / 8일간(초일불산입)
- 접 수 기 간 : 25. 11. 17.(월) ~ 11. 21.(금) / 5일간
- 접 수 방 법 : 이메일 접수(myscreen1@dangjinart.kr)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접수확인 필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기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자격증, 면허증 등)

- ※ 모든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단,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에 한함)
-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
- ※ 작성양식은 당진시청(www.dangjin.go.kr), 당진문화재단(www.dangjinart.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6 유의사항

- 본 채용은 임원(비상임 감사) 직위 채용으로 블라인드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 경력, 학력, 자격 등 관련 정보를 제출 받아 평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공개모집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배수에 미달할 경우 응모자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지원자가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 후 반환하며, 청구가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문서 보존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문화재단 경영지원부(☎041-350-2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